

입원 중에도 일하다 사망... 법원, 업무 스트레스와 기존 질환 악화 인정 합병증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 승소 사례

발신

법무법인 마중
기획지원실

최근 법원이 기존 질환(만성폐장염)을 가진자가 업무 스트레스와 회복 불가 환경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최근 법원이 기존 질환을 가진 노동자가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사건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표면상 '주 4일 근무제'였던 근로자의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입원 치료 중에도 업무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한 근로자의 비극적 죽음은, 만성질환을 가진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와, 회복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현실적 업무 압박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당시 근로자는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회사 측에 이미 퇴사 의사를 밝혔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을까요?

1. 사건의 개요

망인은 50대 초반으로, 사내에서 스마트카드 회로 개발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평소 급성 및 만성 폐장염을 앓고 있었던 그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여러 차례 퇴사를 요청했지만,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체 인력 확보 전까지 근무를 이어 달라"며 지속적인 업무를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업무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회사의 반복적인 임금 체불은 재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안겼습니다.

2021년 9월,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 재해자는 그날 오후 병원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치료 중 저혈당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유족은 재해자의 사망이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유족은 법무법인 마중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며 사건을 다시 다루게 되었습니다.



www.majunglaw.kr

이메일
majunglaw@naver.com

전화
02-3143-1158

2. 1심 패소, 그리고 그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상대로 진행한 첫번째 행정소송의 결과는 패소였습니다.

1심 법원은 “개인 질환에 기인한 사망”이라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판결에서는 ① 재해자의 업무는 통상적 수행 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② 2015년경부터 앓아온 취장염 및 지속적인 음주와 흡연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입원 중에도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을 통상적 근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심의 판단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근로자가 일을 계속해야 했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재해자는 휴식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병상에서조차 업무를 이어가야 했고, 반복되는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단순히 근무 시간과 직무 범위만으로 사망 원인을 판단한 1심의 결론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1심의 결과를 뒤집은 항소심

법무법인 마중은 재해자의 실질적 근무 환경과 건강상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또한 그에 맞는 법리적 의학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재해자가 휴식이 절실히 필요했던 상황에서도 계속 근무를 이어야 했음을 확인했고, 장기간 누적된 업무 스트레스가 기존 취장염을 악화시킨 점을 근거로, 업무와 스트레스가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만성적 스트레스가 체내 염증 유발 물질(사이토카인, 활성산소 ROS)을 증가시켜 취장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업무와 건강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문제 삼았던 음주력과 관련한 오인도 바로잡혔습니다. 항소심에서는 2021년 8월 이후 재해자가 금주를 유지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기존 질환 외에도 업무와 스트레스가 건강 악화의 핵심 요인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고등법원은 법무법인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와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부지급된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취소되고, 산재 인정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발신

법무법인 마중
기획지원실

 법무법인
마중

www.majunglaw.kr

이메일
majunglaw@naver.com

전화
02-3143-1158

4. 한국의 과로 기준, 이대로 괜찮을까?

현재 한국에서 과로 인정 여부는 주로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의 망인도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표면상으로는 주 4일 근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병상에서도 업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된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근무시간 기준만으로 과로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 형태와 시간을 떠나 실제 근로자의 건강과 회복이 보장되지 않으면 과로와 스트레스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병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과도한 업무 부담과 회복권 미보장은, 한국 사회에서 근로자를 보호할 제도적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함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법무법인 마중 정민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단순히 근무시간 초과 여부가 아니라, 노동자가 처한 회복 불가능한 환경과 업무 스트레스가 건강 악화의 직접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노동자의 개인적 비극을 넘어, 한국 사회 근로문화와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는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병상에서도 업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과 만성질환을 가진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한 제도의 공백은 앞으로 정책적·사회적 논의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마중은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에 특화된 로펌으로, 신청부터 소송, 합의, 유관 법률 자문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각 사건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법무법인 마중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김용준

대표변호사

yvince@majunglaw.kr

정민준

부대표변호사

mjjung@majunglaw.kr

* 법무법인 마중 레터는 일반적인 정보를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마중의 공식적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발신

법무법인 마중
기획지원실

법무법인
마중

www.majunglaw.kr

이메일

majunglaw@naver.com

전화

02-3143-1158